

##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서

사건 2006 고단 2459 명예훼손(서울지법 단독 8부, 조귀장 판사)  
피고 김명호,

위 명예훼손사건 관련, (8월 17일 자)공판의 소송절차에 대하여,

형사소송법 제 296 조(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)

①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에 따라,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.

8월 17일 자 공판조서와 참조자료(공판조서 이의 신청서)에 의하면

“판사: 피고인에게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다.

피고인: 아직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여 의견을 말할 수 없고, 다음 기일에 기록 검토 후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진술

판사: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”

라고 하였는 바, 이것은

형사소송법

제 292 조 (증거조사의 방식) ①재판장은 검사,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.

제 293 조 (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)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
에 해당되는 절차로 사료됩니다.

이러한 검사측 증거의 조사 절차에 앞서 **선행되어야 할 절차가** 있습니다.

그것은 검사측이, 증거로서 채택되기 원하는 자료들을, 재판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일입니다.(아래 참조: 형사소송규칙 제 132 조, 제 132 조의 2, 법원실무제요 제 5 장 공판절차)

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측은 증거목록만 제출하였을 뿐, 8 월 17 일 당시까지도 아무런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(참조: 7 월 12 일자,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)

재판부에 제출되지도 않은 자료들에 대하여, 피고인에게 증거의견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송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.

#### 형사소송규칙 제 132 조(증거신청의 방식)

①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#### 형사소송규칙 제 132 조의 2(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)

①형사소송법 법 제 311 조 내지 제 315 조 또는 제 3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**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**하여야 한다.

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경우 또는 법 제 27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#### 법원실무제요 제 5 장 공판절차(검사에 의한 증거신청 방식의 특례)

“검사로서는 그 수사기록 중 어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그 각 서류의 입증취지도 분명히 해야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(형사소송규칙 제 132 조의 2 제 1 항)”

#### 결론:

현대 재판부는 고전에 나오는 “네 죄를 네가 알렀다?”의 변학도식 재판부가 아닙니다. 다시 말해서, 피고는 검사측 공격에 대한 방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.

그에 따라 다시 한번 재판부에 촉구합니다.

위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사실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므로, 허위 사실과 범의에 대한 증거와 그 입증취지를 제출토록 검사측에 명령내려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참조 자료

8 월 17 일자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

2006 년 8 월 22 일

위 피고인 김명호

<http://geocities.com/henrythegreatgod/hyungsa.htm>

서울 중앙지법 단독 8부 귀중